

#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3340
----------	------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0월 18일 /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 상정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마채숙)

### 1. 제안이유

-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은 마포구 권역의 초등아동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많은 아동들에게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형 키움센터와 함께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통해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결합한 사회복지시설임

- 거점형 키움센터는 초등아동의 자유로운 놀이와 쉼의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내 아이돌봄 기관·자원을 수평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초등돌봄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키즈카페를 결합하여 아동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시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안전한 놀이와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 위치 : 마포구 노고산동 107-38 일대
- 규모 : 지상 3층, 전용면적 999.82m<sup>2</sup>(총 면적 1,418.02m<sup>2</sup>)
  - [키움센터] 656.72m<sup>2</sup>(199평) / [키즈카페] 343.1m<sup>2</sup>(104평)
- 조성방법 : 기부채납시설 활용
- 이용아동 및 종사자 정원
  - [키움센터] 아동 110명 / 종사자 12명
  - [키즈카페] 아동 34명(회차별 인원) / 종사자 4명

##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운영
    - 조직·인사관리, 예산집행 및 회계·계약, 물품 및 재산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 초등돌봄 서비스 기획 및 문화·예술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 초등돌봄 자원의 유기적 연계·조정 및 지역특화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 양육자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 등
  - 위탁기간 : 5년(2026. 4. ~ 2031. 3.)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25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25.9.2 4.)
  - '26년 소요예산(안) : 1,643백만원
    - [키움센터] 1,231백만원 / [키즈카페] 412백만원
-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 돌봄센터)
    -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

## 업) 및 제7조의 2

(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 위탁)

## ○ 민간위탁의 필요성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대규모의 시립 사회복지시설로 초등학생 대상 문화·놀이·예술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돌봄 서비스 제공 등 거점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사회와 수평적 연계를 통해 아이돌봄 협력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연계·매칭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자원 활용이 필요함
- 서울형 키즈카페도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돌봄서비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아동의 놀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 돌봄센터)]

- ①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 · 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 · 문화 · 예술 · 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 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②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 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의 2(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 내용)]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 위탁)]

-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나. 예산조치 : 2026년 본예산 편성 요구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I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 1 동의안의 개요

-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은 ‘마포구 노고산동 107-38 일대’의 기부채납시설<sup>1)</sup>을 활용하여 2026년 8월 개소 및 운영 예정<sup>2)</sup>임.
- 해당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sup>3)</sup>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키움센터’와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7호<sup>4)</sup>에 근거하여 아동의 놀이, 오락 및 편의를 제공하는 아동전용시설인 ‘키즈카페’가 결합된 사회복지시설<sup>5)</sup>.

1) 아이돌봄담당관-11115(2025.9.18.),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p.2.

지상 3층, 전용면적 1,305m<sup>2</sup>(층 면적 1,534m<sup>2</sup>)

- (키움센터) 962m<sup>2</sup>(291평) / (키즈카페) 343m<sup>2</sup>(104평)

2) 아이돌봄담당관-11115(2025.9.18.), p.2.

3)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4)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아동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본 동의안은 시장이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신규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 카페 시립 노고산점’에 관한 구체적 사무는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돌봄 공백 해소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놀이공간 운영과 예산집행 및 회계·계약, 시설물유지와 재산관리 등임.
- 2025.10.기준 총 7개소의 거점형 키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 8월 19일 종료 예정인 제3호(종로) 거점형 키움센터의 기능이 동 위탁시설로 통합될 예정으로 기존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나 아동 돌봄 기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해 보임.

시설	노원(1호)	동작(2호)	종로(3호)	구로(4호)	성북(5호)	양천(7호)	강서(6호)
개 소	'20.10.12.	'21.1.4.	'21.10.27.	'23.3.30.	'22.9.13.	'23.11.30.	'25.7.7.
위 치	노원구 동일로 231다길 10	동작구 노량진로 10	종로구 사직로 8	구로구 서해안로 2329	성북구 회기로3길 17	양천구 안양천로 1131	강서구 화곡동 1027-29
규 모	연면적 1,683.81㎡ (지하1층 ~ 지상5층)	연면적 747.19㎡ (지상1층 ~ 지상2층)	연면적 1,480㎡ (지상2층 ~ 지상6층)	연면적 999.15㎡ (지하1층 ~ 지상8층)	연면적 1,170.09㎡ (지상2층 ~ 지상5층)	연면적 1,646㎡ (지상2층)	연면적 684.39㎡ (지상2층)
위탁체 ( 위 탁 기 간 )	서울시여성 가족재단 ('20.6.30. ~ '25.5.31.)	서울시여성 가족재단 ('20.7.1. ~ '25.6.30.)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1.8.20. ~ '26.8.19.)	(사)따뜻한마음 ('22.11.28. ~ '27.11.27.)	(사)동행연우회 ('22.6.10. ~ '27.6.9.)	국민대 산학협력단 ('23.9.19. ~ '28.9.18.)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24.11.20. ~ '29.11.19.)

## 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sup>6)</sup>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sup>7)</sup> 및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sup>8)</sup>에서 시장이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키즈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53조<sup>9)</sup> 및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sup>10)</sup>에 따라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6)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8)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9)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0)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

- 또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11)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제2항12)에서 시장은 돌봄시설 운영 및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점형 키움센터 및 키즈카페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의 근거를 갖춘 것으로 사료됨.

### 3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 카페 시립 노고산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규로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임.
- 문화·예술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과 일반·융합형 센터를 포함한 돌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하고,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비롯하여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놀이 및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
-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에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것이 보다

11)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2)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따라서 향후 집행부서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아동 돌봄분야에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거점기관으로서 조정 및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2026년 8월 19일 종료 예정인 제3호(종로) 거점형 키움센터<sup>13)</sup>의 기능이 본 시설로 통합되는 점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

13) 아이돌봄담당관-11115(2025. 9. 18.)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요지

- 키움센터와 서울형 키즈카페는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동일 법인에 통합 위탁하는 관행을 혀용하는 것은 ‘수탁법인의 전문성 결여’, ‘공공성 약화 및 독점 구조 형성’, ‘행정의 관리감독 기능 무력화’ 등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어 행정적·정책적으로 부적절해 보임.
  - 또한, 아동전용시설은 원칙적으로 무료 이용을 전제로 하나, 서울형 키즈카페는 일반적으로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상 유기시설 등을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사회복지시설(아동전용 시설)’의 범주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해 보임. (도문열 위원)
- 키움센터 및 키즈카페 결합형을 민간위탁 함에 있어 수탁법인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아울러 거점형 키움센터의 주 이용 대상인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 와 눈높이를 고려하여, 키즈카페에 적합한 놀이시설 및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보임. (오금란 부위원장)

##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6명, 찬성4명, 반대2명)

VII.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340
------------	------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은 마포구 권역의 초등아동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많은 아동들에게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형 키움센터와 함께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통해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결합한 사회복지시설임
- 나. 거점형 키움센터는 초등아동의 자유로운 놀이와 쉼의 공간을 제공 할 뿐 아니라, 지역 내 아이돌봄 기관·자원을 수평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초등돌봄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키즈카페를 결합하여 아동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시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 다.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안전한 놀이와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 위치 : 마포구 노고산동 107-38 일대
- 규모 : 지상 3층, 전용면적  $999.82m^2$ (층 면적  $1,418.02m^2$ )
  - [키움센터]  $656.72m^2$ (199평) / [키즈카페]  $343.1m^2$ (104평)
- 조성방법 : 기부채납시설 활용
- 이용아동 및 종사자 정원
  - [키움센터] 아동 110명 / 종사자 12명
  - [키즈카페] 아동 34명(회차별 인원) / 종사자 4명

###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운영
  - 조직·인사관리, 예산집행 및 회계·계약, 물품 및 재산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 초등돌봄 서비스 기획 및 문화·예술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 초등돌봄 자원의 유기적 연계·조정 및 지역특화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 양육자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 등
- 위탁기간 : 5년(2026. 4. ~ 2031. 3.)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25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25.9.24.)
- '26년 소요예산(안) : 1,643백만원
  - [키움센터] 1,231백만원 / [키즈카페] 412백만원

##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 돌봄센터)
-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및 제7조의 2(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 위탁)

### ○ 민간위탁 필요성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대규모의 시립 사회복지시설로 초등학생 대상 문화·놀이·예술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돌봄서비스 제공 등 거점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사회와 수평적 연계를 통해 아이돌봄 협력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연계·매칭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 자원 활용이 필요함
- 서울형 키즈카페도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돌봄 서비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아동의 놀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 돌봄센터)]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의 2(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 위탁)]

-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나. 예산조치 : 2026년 본예산 편성 요구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아이돌봄담당관 정유진 (☎2133-4819)

김유나 (☎2133-4808)